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5-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발전위원회 기구 설치 및 우수 건설인을 선정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 제5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수급 등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함 (안 제4조)
- 우수 건설인 선정 및 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8조)
- 지역건설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지역업체 의무) ① 지역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 및 건설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 건설인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

제7조(우수 건설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시 지원
2. 구정소식지, 구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용배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우수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우수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그 밖에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